

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330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1년 4월 2일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에서 대부료를 감액할 수 있는 비율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상위법령인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(안 제32조제1항).
- 나.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34조의 대부료 감액조정 비율이 확대됨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에 비하여 100분의 5를 초과한 증가분에 대하여 대부료 전부를 감액 조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신설함(안 제32조제2항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
- 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
- 다. 기 타
 - 1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도 첨부
 - 2) 입법예고('21. 1. 28.~2. 17.)결과: 의견없음

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“대부료”를 “대부료(영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대부료를 말한다)”로, “감액율”을 “감액률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를 초과한 증가분에 대하여 전부를 감액조정할 수 있다.

1.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 제2조에 따른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
2. 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
3. 제26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

부 칙

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2조(대부료에 관한 특례)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<u>대부료</u>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, 그 증가한 부분 중 100분의 5를 초과한 증가분에 대하여 감액조정하는 <u>감액율</u>은 100분의 70으로 한다.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32조(대부료에 관한 특례) ① - ----- ----- <u>대부료</u>(영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대부료를 말한다) -- <u>감액률</u>----- ----.</p> <p>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를 초과한 증가분에 대하여 전부를 감액조정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 제2조에 따른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2. 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3. 제26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

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해당사항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함.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·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일부 공유재산에 대해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에 비하여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한 감액조정 비율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.

4. 작성자

재무국 자산관리과 고정민(02-2133-3284)